

#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3. 11(목)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0. 2. 18.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0. 2. 19.

라. 상정일자 : 2010. 3. 4.(제1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자치행정국장 김진택
- 검토보고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인용문구 정비(안 제2조)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의 경우 10억원 이상)”에서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의 경우 20억원 이상)”로 상향된 것과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추가된 내용을 반영함.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용어의 정리(별지서식)
  - “경쟁입찰”이 “입찰”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경쟁입찰”로 된 용어가 있는 별지 서식의 내용을 “입찰”로 용어 정리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동 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안 제2조와 관련하여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2007. 9. 20개정)에 의해 “추정가격 50억원(물품, 용역의 경우 10억원 이상)”에서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 용역의 경우 20억원 이상)”로 변경됨에 따라
  - 이에 법령을 인용하는 것으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 의 >

- 윤지상, 김소림, 지정구, 이근학, 이상철, 김용재, 조남희 위원

- 50억 이상에서 70억이상으로 상향조정된 이유가 무엇이며, 50억이상 60억이하의 계약심의 대상 건수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단서조항으로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예산을 조기집행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제외하는 것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음으로 구분하여 집행하는 것이 어떠한지?
-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많은 직책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계약심의위원장을 분임경리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지금까지 상위법령 등이 바뀌었음에도 시조례등을 개정하지 않고 업무처리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 바 적극 개선하기 바람.

**<답 변>**

○ 김진택 자치행정국장

- 상위법 개정으로 표준안대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50억 이상 60억이하의 대상건수는 19건임. 또한 본 개정내용은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기 적용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일자리 마련이 중요함으로 단서조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임
- 분임경리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윤지상, 김소림, 지정구, 이상철, 조남휘 위원
-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찬성 : 5명)

##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 임 : 1.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과 제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을 “「고등교육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을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별지 심의(자문)요청 내용 란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과 제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와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 ----- ----- ----- -----</p>
<p>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와 10억원 이상인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li> <li>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li> <li>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li> <li>4. 법 제31조 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li> <li>5. 기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li> <li>2. 기타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li> </ol>	<p>제2조(기능)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p>

현행	개정안
<p>제3조(구성 등) ①(생략)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u>시장</u>이 위촉한다.            1. 「<u>고등교육법</u>」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생략)            3. 시민단체(「<u>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u>」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4. 「<u>건설기술관리법</u>」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u>국가기술자격법</u>」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6. (생략)            ③(생략)</p>	<p>제3조(구성 등) ①(현행과 같음)            ②----- <u>각 호</u>-----            -<u>인천광역시</u>(이하“<u>시장</u>”이라 한다)-            1. 「<u>고등교육법</u>」에 따른 -----            -----            2. (생략)            3. ----- 「<u>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u>」 제2조에 따른 -----            -----            4. 「<u>건설기술관리법</u>」에 따른 ----- 「<u>국가기술자격법</u>」에 따른 -----            -----            5.~6. (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u>시</u> 본청의 경리관이 된다.            ②~③(생략)</p>	<p>제4조(위원장 등) ①-----<u>인천광역시</u>(이하 “<u>시</u>”라 한다)-----            ②~③(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u>당해</u> 위원을 <u>해촉</u>할 수 있다.            1.~4. (생략)            5. <u>기타</u>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p>	<p>제5조(위원의 해촉) -----            --<u>각 호</u>-----            -----<u>해당</u>-----<u>위</u>  <u>촉 해제</u>-----            1.~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u>-----            -----</p>
<p>제9조(심의요청과 심의결과 통보 등) ①(생략)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u>날로부터</u>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u>당해</u>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제9조(심의요청과 심의결과 통보 등)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u>날부터</u> -----            -----            -----            -----            -----            -----<u>해당</u>-----            -----</p>

현행	개정안
<p>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 -----</p> <p>④제3항에 따라 ----- ----- ----- ----- -----</p>
<p>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사로써 다음과 같은 공사로 한다.</p> <p>1.~8. (생략)</p> <p>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p>	<p>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 ----- -----</p> <p>1.~8. (생략)</p> <p>9. 그 밖에----- -----</p>
<p>제13조(수당 등) ①위원회의 위원,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계약담당자와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3조(수당 등) ①----- ----- ----- 범위에서 ----- ----- ----- ----- -----</p> <p>②제10조에 따라----- ----- ----- 범위에 선-----</p>

## 현 행

### [별지]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요청서

관리번호		구 분 (해당내용에 √표시)	공사, 용역, 물품
계 약 명			
추정가격	원	발주시기	년 월
발주자	기관명	담당자	성 명
	부서명		연락처
심 의 (자문) 요청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li> <li>○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li> <li>○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li> <li>○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li> <li>○ 기타 심의(자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체적으로 작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해당내용에 √표시</p>		
첨부서류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자문을)			
년 월 일			
계약담당자 :		(직인)	

## 개 정 안

### [별지]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요청서

관리번호		구 분 (해당내용에 √표시)	공사, 용역, 물품
계 약 명			
추정가격	원	발주시기	년 월
발주자	기관명	담당자	성 명
	부서명		연락처
심 의 (자문) 요청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li> <li>○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li> <li>○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li> <li>○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li> <li>○ <u>그 밖에</u> 심의(자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구체적으로 작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해당내용에 √표시</p>		
첨부서류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자문을)			
년 월 일			
계약담당자 :		(직인)	